

# 펀드투자권유 전문인력 투자자보호

# Lesson

## 투자자분쟁 예방 2

- 
1. 해외펀드 투자권유 관련 분쟁 사례
  2. 채권형펀드 투자권유 관련 분쟁 사례
  3. 펀드 불완전판매 사례
  4. 해외펀드 환헤지를 위한 선물환계약 체결 관련  
분쟁사례

# 학습이정표

## • • 학습목표

- 펀드 투자권유 및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투자자 분쟁 사례를 통해 어떠한 부분에서 투자자 보호에 미흡한 사항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 투자자 분쟁 사례를 통해 관련 법규와 직무윤리 준수 의지를 고취하고, 나아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금융투자업 종사자로서의 올바른 자세를 확고히 할 수 있다.

## 학습내용 • •

- 해외펀드 투자권유 관련 분쟁 사례
- 채권형펀드 투자권유 관련 분쟁 사례
- 펀드 불완전판매 사례
- 해외펀드 환헤지를 위한 선물환계약 체결 관련 분쟁사례

# 투자자분쟁 예방 2

1

## 해외펀드 투자권유 분쟁 사례

### 1. 사실관계

- 러시아 국채에 직접 또는 러시아 국채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노트(Note)에 주로 투자하는 단위형, 폐쇄형 펀드 설정 (1996년)
- 동 펀드 설정 당시 한국 펀드 시장에서는 국내/해외를 불문하고 채권형 펀드에서 큰 손실이 발생한 사례는 없었음
  - 또한 당시 러시아 신용등급은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상황이었음
- 이에 해당 펀드 투자권유 과정에서 “러시아가 망하지 않는 한 이 펀드는 고수익이 보장되는 펀드”, “러시아는 미국과 동급의 강대국인데 러시아가 망할 일이 있겠느냐”라는 내용으로 투자권유가 이루어짐
- 하지만 1998년 8월 러시아의 모라토리움 선언으로 인해 펀드 기준가격 산정이 중단되었고 결국 회사는 투자원금 대비 20% 수준으로 개별 합의 추진

### 2. 투자자 보호 관련

- 설명의무 위반
  - 높은 안전성을 보유한 국채라 하더라도 펀드 재산의 90% 이상을 동일 국가 자산에 투자하는 데 따른 Country Risk 고지 부족
- 적합성 원칙 위반
  - 고령 투자자들의 은퇴자금, 배우자 사망으로 수령한 보험금 등 높은 안정성을 요구하는 자금에 대하여서도 복수 펀드에 대한 분산 투자를 하지 않고 러시아 펀드 시리즈에 전액 투자하는 경우도 있었음

### 3. 시사점

- 우리나라 펀드 시장 최초로 투자원금 전액 손실 가능성 대두
- 대규모 소송을 통해 집단소송과 유사한 효과를 거두기도 하였음

# 투자자분쟁 예방 2

2

## 채권형펀드 투자권유 분쟁 사례

### 1. 사실관계

- 영업점 직원이 10년 이상 거래해 온 단골 고객에게 국내채권형 펀드를 투자권유
  -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펀드의 목표 수익률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무심결에 수익증권저축통장 표지에 연필로 해당 숫자를 표기
- 이후 1년의 투자기간 경과 후 해당 펀드는 목표 수익률에 다소 못 미치는 수익률을 실현
  - 투자원금 3억 원 대비 투자손실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목표수익률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약 7백만 원 정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음
- 투자는 영업점 직원이 수익률을 보장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목표수익률로 계산한 금액에 맞추어 7백만 원을 자신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주장
  -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까지 갔으나 투자자 전부패소 판결
  - 청구원인을 달리 하여 투자수익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다시 대법원까지 갔으나 역시 투자자 전부패소 판결

### 2. 투자자 보호 관련

- 회사 자체 확인 결과 해당 고객은 10년 이상 채권형, 주식형, 해외 펀드 등 다양한 투자 경험을 가지고 있었음
- 해당 영업점 직원 또한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바 없이 충실히 설명의무를 이행하였고 고객으로부터 관련 서류도 빠짐없이 징구하였음
- 다만 무심결에 통장에 목표수익률을 기재한 사실이 고객과의 분쟁의 빌미가 된 것으로 보임

### 3. 시사점

- 펀드 투자를 통해 손해를 보거나, 혹은 투자 당시 수익률에 미치지 못하는 수익을 구현하게 될 경우 투자자로서는 불만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음
- 이러한 때에 자칫 고객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 문서 등으로 인해 고객과의 분쟁이 발생할 위험이 있음
  -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되 임직원 본인의 보호를 위하여서라도 관련 법규 및 직무윤리 준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님

## 투자자분쟁 예방 2

3

### 펀드 불완전판매 사례

#### 1. 사실관계

- 2000년대 중반 은행에서 펀드 판매를 막 시작한 초창기 무렵, 타행송금 업무를 처리하던 중 여유자금에 대한 적금 가입 권유를 받음
  - 이자율이 만족스럽지 않다며 거절
- 그러자 직원은 창구에 있던 전단지를 하나 꺼내 건네며, ‘이자’가 조금 더 높은 상품이 있는데 여기에 가입해 보지 않겠느냐며 권유
  - 그런데 전단지에 소개된 상품은 적금이 아니라 펀드였음
- 이에 고객이 문제제기를 하자 해당 직원은 즉시 투자권유 중단

#### 2. 투자자 보호 관련

- 원리금이 보장되는 예·적금 상품과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펀드를 마치 유사한 상품인 양 제대로 구분하여 설명하지 않고 투자권유한 전형적인 불완전판매에 해당

#### 3. 시사점

- 회사 차원의 실적 압박이 있을 경우 판매 임직원들이 무리한 영업을 시도하게 될 위험성 존재
- 채널 확대 초창기 직원 교육 및 기타 컴플라이언스 활동이 중요함

## 투자자분쟁 예방 2

4

### 해외펀드 환헤지를 위한 선물환계약 체결 관련 분쟁 사례

#### 1. 사실관계

- 과거 해외펀드 투자 시 투자자가 직접 환헤지를 하는 경우가 있었음
  - 즉, 투자한 해외펀드 환매 시 지급받게 되는 달러화를 기초자산으로 은행과 개별적으로 선물환계약을 체결
- 선물환계약 기간 및 선물환 커버 금액 범위를 투자자가 선택 가능, 대부분의 경우 투자원금 전부에 대하여 1년 단위로 선물환계약 갱신
- 그런데 투자한 펀드에서 손실이 큰 폭으로 발생하였고 투자자 중에서는 투자원금 대비 50% 이상 손실을 입은 경우도 있었음
  - 이러한 상황 하에 선물환계약 갱신 시기가 도래한 경우 큰 폭의 오버 헤지가 발생하였고 부족한 달러를 투자자가 채워 넣어야 했는데
  - 이때 만일 환율도 큰 폭으로 상승하였을 경우 투자자는 선물환계약을 통하여서도 큰 손실을 보게 되었음
- 이에 투자자는 펀드 판매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
  - 펀드 판매회사의 투자자 보호 노력 정도, 투자자의 상황에 따라 회사의 책임 유무 내지 책임을 인정할 경우 그 수준이 결정되었음

#### 2. 투자자 보호 관련

- 펀드 판매회사의 설명의무 이행 여부, 선물환계약 체결 은행의 설명 의무 이행 여부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선관주의 의무가 문제되었음
- 선물환계약이라는 공통된 사안에서 비롯된 사건이지만 개별적,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판결이 내려짐
  - 즉, 펀드 판매회사가 증권사/은행 여부, 증권사인 경우 선물환계약 체결 은행을 단수/복수 제시 여부, 은행인 경우 자기 은행과 선물환 계약 체결 여부, 선물환계약 체결 권리 당시 커버 범위를 투자원금 100%, 갱신기간 1년으로만 제시되었는지 선택 가능 대안이 복수로 제시되었는지 여부, 투자자의 선물환계약 갱신 경험 여부 등
  - 상황에 따라서는 회사 전부승소 판결이 내려진 경우도 있었으나, 상당수 소송에서 회사에 일정 수준의 손해배상책임을 판결하였음

## 투자자분쟁 예방 2

**4**

### 해외펀드 환헤지를 위한 선물환계약 체결 관련 분쟁 사례

#### 3. 시사점

- 선물환계약은 장외파생상품에 해당하는데 펀드 투자 환헤지 수단으로만 생각하여 그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음
- 만일 환헤지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펀드 기준가격 하락 폭이 커져서 선물환계약 금액 대비 오버헤지의 폭이 커졌을 경우에는 이를 투자자에게 알려서 계약중도해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야 함
- 이후 해외펀드에 대한 환헤지를 투자자 개인이 직접 하는 경우는 대폭 줄어들었고, 해외투자펀드의 경우 상당수가 헤지형/언헤지형 두 가지를 출시하여 투자자가 어떠한 펀드에 투자할 것인지 선택권을 부여



## 정리하기

- 펀드 자산의 대부분을 러시아 국채에 투자하는 펀드에서 러시아의 모라토리움 선언으로 인해 기준가격 산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는 등 큰 폭의 손해가 발생하였는바, 이때 설명의무 위반, 적합성원칙 위반 등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었다.
- 채권형펀드 투자권유 과정에서 투자설명서상의 목표수익률을 수익증권 저축통장에 연필로 기재한 사실이 계기가 되어 고객과 오랜 기간 소송을 수행하였는바, 임직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서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은 지양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 원리금이 보장되는 예·적금 상품과 원본 손실 위험이 있는 펀드를 마치 유사한 상품인 양 소개하는 것은 전형적인 불완전판매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
- 투자원금을 초과하여 손실 발생이 가능한 파생상품 내지 이를 기초로 하여 만들어지는 파생상품펀드, 파생결합증권 등을 투자권유하는 데에는 더욱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기울이는 편이 바람직하며, 또한 일단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중요한 상황 변화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반드시 고객에게 연락하여 향후 진행 절차를 고객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